보증채무분쟁해결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윤 종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규범과 규정은 아무리 구체적으로 만들어져도 각이한 환경과 조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다 예견하여 규정할수는 없으며 그 일반적요구 즉 표준만을 설정하게 되는것입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6~147폐지)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리행문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민법은 그에 대하여 일일이 다 규제할수는 없다. 이로 하여 여러가지 형태와 내용을 가진 채무리행문제들을 해당 민법상의 일반적요구와 원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리론적기초를 명확히 하는것은 민사법실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채권채무관계에서 보증은 인적담보로서 경제관계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공간으로 된다.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증과 관련된 분쟁문제를 설정된 보증채무의 특성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보증채무분쟁해결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옳바른 리해를 가져야 한다.

보증채무분쟁해결에서 나서는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보증채무가 일반채권담보에서의 채 무보다 그 책임이 무겁고 복잡하므로 사건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는것이다.

사회경제관계에서 채권담보와 관련된 분쟁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경제거래의 안정 성과 정상성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보증채무분쟁문제는 채무자의 채무불리행시 그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앞에 담보를 보증한자가 지니는 채무와 관련된 분쟁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채권담보는 물적재산권에 기초한 담보와 순수 채권에 기초한 채무법상의 담보로 나눌수 있다. 물적재산권에 기초한 담보로는 류치권과 전당권, 저당권에 기초한 담보 권이 있으며 채무법에 기초한 담보로는 계약상의 보증담보가 있다. 이외에 계약상보증금도설정될수 있다.

보증은 인적담보로서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채권담보로 제공된 특 정재산범위안에서의 유한책임을 이루는 물적담보와 구별된다.

보증은 채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채무리행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하는 행위이다. 보증은 채무불리행에 대하여 보증자의 재산으로 원채무의 리행을 담보하는 행위로서 일반물적재산권에 기초하는 담보책임보다 더 무거운 채무로 된다.

보증채무분쟁문제들에는 당사자들의 심중한 리해관계가 반영되는것으로 하여 그의 옳은 해결은 민사법실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보증채무분쟁해결에서 나서는 문제는 다음으로 보증채무분쟁사건해결의 근거를 명백 히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우선 보증채무분쟁사건해결의 법적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민사법률관계 실천에서 보증채무문제는 은행대부신용관계뿐아니라 일반거래관계에서 도 매우 다양한 보증담보형태로 존재한다.

여기에서 법인들사이의 은행대부가 아닌 일반거래에서 이루어진 보증분쟁문제는 어떤 법적근거에 기초하여 해결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민법전에 규제된것이 없다고 하여 보증채무분쟁문제를 법적용자들이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현행 민법조문들을 체계적으로, 론리적으로 해석한데 기초하여 분쟁사건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일반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진 보증관계는 민사법률행위제도의 조문들과 일반규정의 조문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의 조문들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대부신용관계에서처럼 규정이나 세칙들에 규제된 경우에는 그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것은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와의 쌍방적법률행위인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리행되는 법률행위이기때문이다.

또한 보증채무설정의 사실적근거를 명백히 확인한데 기초하여 사건해결을 내려야 한다.

보증관계설정에서 중요한것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이 책임지려는 의사를 채권자에게 표시하는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채무리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보증인자신이 그 리행을 책임진다는 정확한 채무리행담보의사로 표시된것이여야 한다.

민사관계의 실천에서는 채권자와 잘 알고있는 제3자가 채무자의 지불능력이나 신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행위를 믿고 채무관계를 설정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는데 제3자가 우연히 리용된 경우에도 해당 제3자에게 보증채무를 지우려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주채무에 기초하여 보증인과 채권자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증인과 채권자사이의 계약은 보증채무의 기본기초로 되며 따라서 그것은 내용상으로도 엄밀하여야 한다.

보증채무의 내용은 적어도 보증받는 채권의 종류와 수량, 채무자의 채무리행기한과 그에 대한 보증방식, 보증담보의 범위와 보증기한, 거래쌍방이 계약으로 정해야 할 기타 사항의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한 기간 련속 이루어지는 채권채무관계에서는 가장 높은 채권액한도내에서 채무리행을 보증하는 계약도 체결할수 있다.

보증계약은 주채무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체결할수도 있고 성립후에 체결할수도 있다.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우에서 서술한 내용들이 완전하지 못한데 대하여 계약후에도 채권자와 보증인이 계속 보충합의하는 경우 그것은 보증채무내용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

보증채무분쟁해결에서 나서는 문제는 다음으로 여러가지 보증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이 지니게 된 권리의무의 한계에 맞게 사건해결을 내려야 한다는것이다.

채무리행보증담보는 채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대신 채무를 리행하 거나 그 책임을 부담할데 대한 채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다.

보증관계에서 보증인은 자신의 신용과 재산으로 남의 채무리행에 대한 담보제공자로 되며 리행보증을 받는 채무자는 보증을 받는자로 된다. 그리고 리행보증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보증채권자로 된다.

이처럼 채무리행보증담보행위로 설정되는 보증법률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보증을 받는자), 보증인 세 당사자가 항상 서로 다른 계약으로 련계된다.

이러한 보증법률관계를 법적으로 하나의 고정된 틀에 맞추어 해결하려 하여서는 안된다. 보증법률관계는 여러 당사자들이 각이한 위치에서 각자의 리해관계에 따라 권리의무 를 지니는것으로 하여 보증형태나 내용도 각이하게 이루어진다.

보증법률관계에서의 하나는 원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주채권채무관계인데 이것은 보증관계가 존재하게 하는 기본채권채무관계로 된다. 다른 하나는 보증인과 보증을 받는자(즉채무자)사이의 위탁관계와 보증인과 채권자사이의 보증관계이다. 보증인과 채권자사이의 보증관계는 기본채무리행을 보증하는 관계이다.

보증은 보증책임의 형태에 따라 일반보증과 련대보증, 공동보증으로 나눌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증은 일반보증이나 련대보증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것은 보증인이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리행할 채무를 지는가 아니면 채권자앞에 채무자와 함께 련대하여 리행할 채무를 지는가에 따르는 구분이다.

일반보증은 채무자의 채무불리행시에 보증자가 채무를 리행할 책임을 지는 보증이다. 그 것은 일반보증채무는 채권자가 원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리행받을수 없는 경우에 지는 보충 채무이기때문이다. 이로 하여 일반보증인은 채권자의 보증채무리행청구에 대하여 원채무자 에게 채무리행청구를 하여 그가 채무리행능력이 없다는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보증채무리 행을 청구할것을 원채권자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련대보증은 채무리행에서 채권자앞에 기본채무자와 보증채무자가 련대하여 채무리행의무를 지는 보증이다. 이 경우 채권자는 기본채무자나 보증채무자중 아무에게나 채무리행을 청구할수 있다.

공동보증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보증인들이 동일한 채무리행에 대한 보증이다. 공동보 증인들사이의 보증채무는 련대적일수도 있고 분할적일수도 있다. 이 경우 련대채무와 분할 채무법률관계에 대한 민법규범이 적용되여야 한다.

보증채무분쟁해결에서 나서는 문제는 다음으로 보증채무설정의 적법성을 확인한데 기 초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법인들이 보증인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의 본신업무와 과업에 모순되는것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때문에 기업체법인이 아닌 예산제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보증인으로 될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인들의 보증채무는 서면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에는 계약된 주되는 채권과 리자, 위약금, 손해보상금과 채권실 현비용 등이 포함된다.

채권자는 보증담보채권을 설정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리행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들이 채권자로 나서는 경우 보증인의 지불능력을 의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보증인의 재산상태로 원채무청산능력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증접수가 거절되여야 한다. 보증채무를 담보로 하는 법인들의 경제거래가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은행은 응당히 보증채무자의 청산지불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증에 의하여 채권자는 보증계약상의 채권으로 보증인앞에 청구권을 가진다. 즉 채무자의 채무불리행시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리행청구권을 가지며 재판소에 그에 대한 강제집행청구권도 가지게 된다.

보증채무분쟁해결에서 나서는 문제는 다음으로 보증채무의 효력과 보증채무를 리행한

후에 제기되는 당사자들사이의 책임관계도 정확히 확정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보증인은 채무리행후 채무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동으로 련 대보증책임을 설정한 경우 채무리행을 부담한 보증인은 기타 련대책임보증인들에게 그들 이 채무청산에서 응당히 져야 할 몫만큼 보상할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보증채무를 리행할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대신 행사할수 있으며 주채무의 완전리행으로 채무자에게 응당히 차례질 물적재산에 대한 청구권도 대신하여가질수 있다.

보증인과 채권자의 보증범위가 보증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무의 전부리행을 보증한것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라 보증인은 채무전부리행에 대하여 책임진다.

원채무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보증인이 나선 경우 그들사이의 보증채무의 몫은 계약에서 정한데 따르며 그 몫이 정해지지 않거나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 보증은 공동보증인들의 련대보증으로 추정하고 련대보증책임을 지워야 한다.

보증채무는 기한적으로도 한정된다. 그것은 보증채무의 효력이 무기한일수는 없기때문이다.

보증인이 일정한 기한내에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계약한 경우 채권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리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는 소멸된다.

계약상보증기한이 정해지지 않아도 주채무청산기한이 된 후 시효기간내에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리행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는 시효경과로 하여 소멸되게 된다. 그리고 보증 기한내에 보증인의 동의없이 채무가 이전되거나 주계약이 변경되면 그날부터 보증인의 보 증채무는 소멸된다. 그것은 보증채무가 이미 확정된 주채무의 리행에 대한 보충채무이기때 문이다.

우리는 민사법실천에서 보증채무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경제거래의 안정성, 정상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